

『2025 하반기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년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사업추진에 따른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10.27. (재)제주콘텐츠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제주에서 촬영제작하는 영상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제주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고 도내 영상문화산업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공 고 명: 2025 하반기 제주 로케이션 영상물 제작비 지원 사업(인센티브)
-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소진 시까지(2025년 회계연도 기준)
- 접수기간: '25년 11월 3일(월) ~ 11월 16일(일) 18:00까지(14일간)
- 지원대상: 아래 분야 중 도내 5회 차 이상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2025년 1월 1일 이후 기준),
 - ※ 2025.1.1.~2025.11.16.기간 중 제주에서 촬영을 완료했거나, 해당 기간 내 일부 촬영을 진행한 작품
 - ※ 웹 드라마, 해외(방영/개봉) 다큐멘터리의 경우 도내 3회차 이상, 도내소비액 5백만 원 이상
 - ※ 해외작품의 경우 국내 PS(Production service) 업체를 통해 신청이 가능
 - ※ 예능의 경우 도내 3회 차 도내소비액 1천만 원 이상

구분	지원내용
1. 극장 개봉 확정 장편극영화 2. 지상파, 종편 CATV, 유료 OTT 플랫폼 방영(편성) 확정 드라마 및 예능 3. 해외 다큐멘터리(해외 편성 확정 시 공동제작 작품 지원 가능)	도내 소비액의 30% 최대 100,000천원 지원 (예능 최대 20,000천원)

- 선정방법: 내부심사 : 외부심사위원 3명으로 구성하여 심사

○ 지원 상세기준

구분	상세기준
신청대상	국내 영화/드라마 제작업 등 신고를 한 제작사 대표 또는 프로듀서 ※ 해외 작품의 경우 한국 측 진행 프로덕션(PS) 통해 신청가능
제외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청일 기준 국제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3. 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참여 제한 대상자 4. 영화진흥위원회 공정환경조성센터 또는 영화인 신문고 등을 통해 각종 분쟁 중인 피신고인 5. 성범죄로 기소되었거나 재판 중인 지원 대상자가 향후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6. 작품 내 시나리오, 음원, 상표권 등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분쟁 중인 경우 7. 촬영으로 인한 자연환경보전법 위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제주 자연 생태계를 훼손한 경우 8.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지원작 제외/웹 드라마의 경우 무료 OTT(ex: youtube) 채널에만 업로드하는 경우 제외 9. 본 사업 목적상 국내 다큐멘터리, 인포테인먼트, 지역 TV 프로그램(예능제외), 단편 또는 실험영화는 제외 10. 포르노그래피, 폭력미화, 인권침해, 역사왜곡 등 사회질서 및 사회 미풍양속에 반하는 영상물 제외

○ 선정기준 및 배점표

- 평가항목(안)

평가항목(100점)	주요 내용
지역경제 기여도(30점)	지역 내 소비 지출 규모 (숙박, 식비, 자재비 등)
작품의 완성도 및 파급력(30점)	유통 가능성, 국내외 방영/개봉 가능성, OTT 포함
촬영 일정 및 분량(20점)	실제 촬영일 수, 촬영 장소 수, 전체 중 해당 지역 촬영 비중
홍보 효과(10점)	로케이션 지역이 작품 내 잘 드러나는지 여부 (배경·장소 노출 등)
기타 기여도(10점)	지역 스태프·출연진 고용 여부, 시사회 개최 여부 등
우대사항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30일 이상 장기대여 작품 우대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이 가능

- 지원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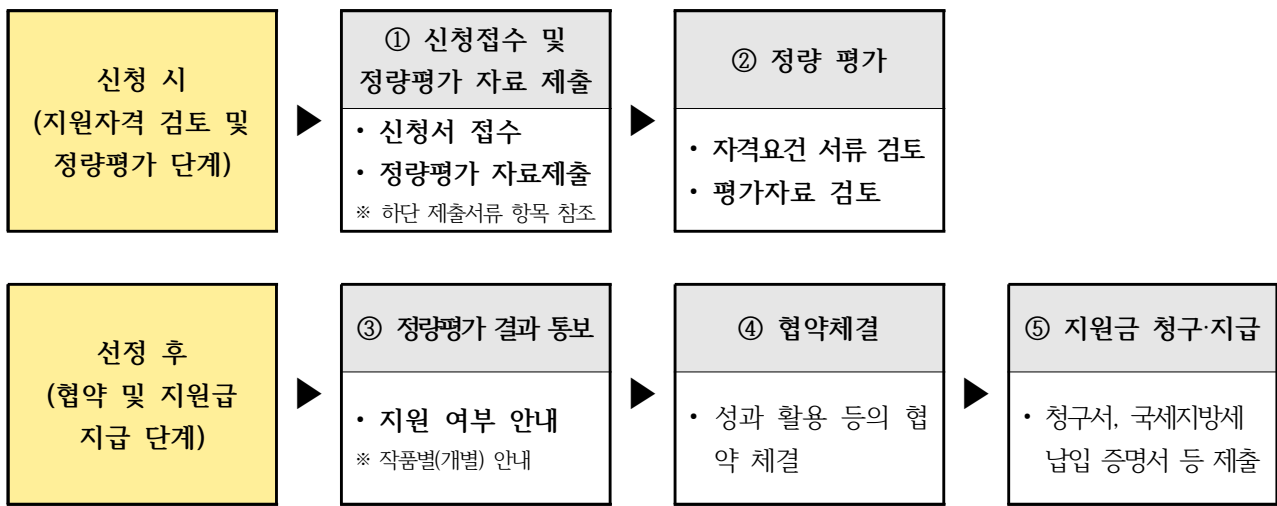
점수범위	지원최대금액(A)	최종 지급기준(B)	금액
90점 이상	(도내소비액 × 30%)	지원가능금액(A)의 91 ~ 100%	최대 100,000천원 지원 (예능 최대 20,000천원)
70점~89점		지원가능금액(A)의 61 ~ 90%	
60점~69점		지원가능금액(A)의 40 ~ 60%	

- 제주실내영상스튜디오 장기임대 30일 이상 대여 작품은 가장 높은 ‘최종지급기준(B) 91~100%’ 적용
- 인센티브 예산 상황에 따라 최종 지급액 변동가능

3.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5년 11월 3일(월) ~ 11월 16일(일) 18:00까지(14일간)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rhgusw1212@ofjeju.kr
 - ※ 제출 후 확인 전화 필수(☎ 064-735-0662)
 - ※ 제출 서류(양식)는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신청 및 지원 절차



○ 지원내용: 도내 소비액의 최대 30%(부가세 제외, 최대 1억원)

- 도내소비액 인정 기준

	구 분	내 용
인 건 비	비목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거주 참여인력 현황에 명시한 촬영 스텝에 한하여 직접 지급되는 인건비 • 제주에 거주하며 활동 중인 배우 출연료
	집행 및 증빙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촬영 기간 내에 한하여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 외 별도의 계약(참여기간 및 참여율 등)에 의하여 집행하되 내부 인력 급여성 경비 불인정 • 계좌 이체거래만 가능
	참고사항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인원에 한함(주민등록증상 제주특별자치도) • 인건비는 전체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임차비	비목정의	• 외부장비 및 장소 섭외 제반 등의 시설물의 사용과 같이 순수 임차 비용 (제주도내 업체에 한함)
	집행 및 증빙기준	• 외부장비 예 : 촬영조명·음향장비, 특수효과, 특수장비, 운반비, 중계장비, 차량 임차료 등 • 외부시설 예 : 장소 섭외비, 녹음실 및 편집실 임차비 등(사무실 임차료 제외)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함 (계좌이체 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첨부)
	참고사항	• 자가시설 이용료 등 제작과 관련되지 않은 임차비 불인정
	(주의사항)	• 자산취득비(장비 구입비 등) 불인정

- 장소임차료: 장소사용계약서, 임차장소촬영사진 2장이상 포함

	구 분	내 용
제작진행비	비목정의	• 영상물 제작을 위한 제주도내 진행비
	집행 및 증빙기준	• 숙박비, 식비(일반음식점에 한함), 간식비, 유류비, 미술품, 소품 대여비 등 도내에서 사용되는 진행비 일체 (숙박비 1인 80,000원 이하) • 금액을 불문하고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및 법인카드, 사업자 전용 신용카드를 원칙으로 함 • 인건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음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구매하는 소모품은 소명 가능할 경우만 인정
	참고사항	• 유흥업소 및 일반주점, 주류, 사우나, 담배 및 기타 회식비 등 불인정
	(주의사항)	• 개인에게는 지급할 수 없으며, 전화요금 및 공과금 등 경상경비 불인정 • 식대 및 숙박의 경우 사용 인원 명단 첨부 • 개인카드/개인 현금영수증/간이영수증 불인정

- 숙박비: 숙소배정표 첨부

○ 유의사항

- 인센티브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 인정액보다 작을 수 있음
- <2025 제주 국내·외 프리프로덕션 지원사업>과 동일 지출 항목에 대해 중복지원 불가
-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검토 결과 부적격 제작사의 경우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2025년 1월 1일부터 11월 16일까지 도내 소비액만을 인정함
※ 접수 이후 촬영분(회차, 도내소비액 등)은 불인정
- 서류 미비, 누락 등 첨부서류가 충분치 못한 경우 접수 불인정
- 항공 및 선박료는 제외
- 최종지원금은 천 원 단위 이하 절사 후 지급(소수점 삭제)
- 접수 시 제출한 도내 소비금액과 차후 제출한 정산자료 내용이 불일치한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작품이 1편인 경우: 지원대상 자격 여부만 검토 후 선정
- 사업요강 및 접수요령 미숙지에 따른 지원취소 등의 책임은 접수자(제작사 등)에게 있음
- 협약사항 불이행 시 2년간 진흥원 사업 참여 제한(제작사, 대표, 연출자, 프로듀서 등 관련자 포함) ※참여제한 기준일: 협약 해지일로부터 2년간

4. 제출서류

○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

신청 서류 리스트		
순번	내 용	양 식
1	지원신청서 1부(직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범죄 위반 등의 확인서	붙임(1~4)
2	사업자등록증(제작업 신고 증빙용)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사업자 인감증명서(신청서 직인 기준)	
4	투자 및 배급계약서 또는 방송, 플랫폼 편성 계약서 1부	
5	도내 소비액 예산서(진행비, 임차비 등 항목 구분해서 표로 제출) - 「서식1」 제작비 비목별 산정기준 참조(엑셀 등 자체 양식 제출 가능)	
6	<p>도내소비액 증빙</p> <p>(6-1).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공인 회계감사보고서 1부</p>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p>■ 공인회계정산서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사나 세무사 등 자격을 갖춘 외부 감사인에게 도내 소비 거래 내역에 대한 실사를 받고, 이를 증빙하는 자료로 공인회계정산서 또는 감사보고서 등을 뜻함 · 제출한 회계정산서의 인정액은 진흥원에서 실제 지급할 금액이 아니며, 회계정산서는 영상 촬영으로 인한 도내 소비액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절차 서류임 </div> <p>(6-2) 매출전표 등 거래 내역 증빙 서류 일체</p> <p>(6-3) 제작비 지출 카드(법인카드, 제작사 대표 카드 등) 앞 사본</p>	자체양식 또는 서식참조
7	제작기획서(제작의도, 시놉시스, 배급·편성계획, 투자 및 배우캐스팅 등의 내용)	자체양식
8	참여 스텝 리스트(숙박료 증빙 관련 서류)	
9	최종본 시나리오와 도내 촬영 내용 발췌(올로케이션 작품인 경우 발췌 생략 가능)	
10	제주 내 일일촬영계획표(회차별 사진 첨부)	

- 해외작품 추가제출 서류

- 해외 제작사와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사 간 계약서
- 국내 프로덕션 서비스사의 사업자등록증
- 투자계약서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작품의 개요 및 트리트먼트, 주요 제작지의 약력등일 포함된 제작계획서

※ 모든 서류는 국문제출을 기준으로 하며, 영문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 제출

○ 선정 후 제출서류

<최종 지급 단계>

- ▶ 진흥원에서 정산자료 검토 후 최종지원금 통보 시 협약 단계 진행
- ▶ 협약 이후 아래 서류 제출

1. 청구서
2. 국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3. 지방세완납증명서(발급 유효기간 인정범위)
4. 통장사본
5. 촬영자료(스틸사진, 현장스틸사진, 포스터 등) 제출(최소 5장 이상)
 - ※ 제출된 자료는 보고용으로 사용되며, 작품개봉(송출)이후 비영리 목적으로 진흥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되어야 함. 작품상황에 따라 추후 제출되어야 하는 상황인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사진의 종류와 수량을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추후 미제출 시 환수조치)

○ 정산 내역 제출 시 유의사항

<정산자료 증빙 제출서류>

1. 법인카드, 신용·체크카드 등 제작비 지출 카드 앞면 복사본(유효기간 제외)
 - ※ 카드지출 없을 시 불필요/개인카드 불인정
2. 지출 내역 증빙 내용

카드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제주 사업자 표기된 내역만 인정/유효, 일반주점, 주류, 담배 등 불인정) ▶ 도내소비액 예산서와 맞추어 매출전표별 번호 기입 후 사본 제출 	
계좌이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거래 시	개인과의 거래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제주 소재만 인정) ▶ 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확인증 ▶ 수령 기업(대표자) 통장 사본 ▶ 계약 내용 증빙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증 사본(제주도민만 인정) ▶ 원천징수영수증(소득신고 필수) ▶ 계좌이체 확인증 ▶ 수령인 통장 사본(신분증 기준) ▶ 계약 내용 증빙 서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금거래 시 사업자 현금영수증 필수 ▶ 미제출 된 법인카드, 개인카드, 간이영수증, 개인 현금영수증 불인정 	

3. 정산내역 서류 중 증빙적 해석이 어렵거나 미비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보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불이익이 갈 수 있음
4.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신청 제작사가 부담

5. 협약체결 및 사후 관리사항의 조율

○ 작품 활용 및 조건에 대한 협약 체결 주요 내용

- 지원작품(영상물)의 공식포스터, 스틸컷 등 공익의 목적을 위한 홍보자료 제공
 - ※ ‘제주특별자치도’, ‘진흥원’, ‘진흥원 협약기관’ 이 제주와 관련된 비영리적 업무 일환으로 활용 예정(예시 : 보도자료, 촬영지 홍보, 진흥원 사업소개 브로슈어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진흥원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을 통한 제작 지원 사항 표기

<p>작품크레딧 ‘제주특별자치도’,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지원사실 명기(로고 삽입) ※크레딧 명기가 어려울시 상호협의를 진행</p>	 <p>(재)제주콘텐츠진흥원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작</p>
---	---

- 기타 영상물 제작 지원 및 활용에 관한 협의 사항
 - ※ 위 사항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사후관리 주요 내용

- 개봉 또는 방영 후 도내 제작과정에 대한 홍보 협력
- 장편극영화의 경우 개봉 전 시사회, 도내 시사회 개최 등에 관한 협력
- 촬영지원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 주민 초청을 통한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협력
 - ※ 위 사항은 협약 과정 중 상호협의 후 조율

6. 협약의 해지

○ 협약은 다음 각 사항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조치

1. 제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2. 관리기관과 신청기관이 협약 해지에 합의한 경우
3. 신청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작이 취소 또는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5. 협약 이후 지원 제외 대상이거나 자격이 불충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